

| 절차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 (권리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 |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모두 요구되는 절차 (좌측 경우 제외한 모든 절차) |
|---|---|
| · 타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정보제공 | · 출원, 보정, 분할, 분리, 변경 등 |
| · 특허취소신청인 · 각종 무효심판 청구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 · 각종 무효심판 피청구인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 · 정정심판 청구인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 ·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 |

| 주요내용요약 | | | |
|--------|-----------------------------------|---------------|---------|
| 당사자능력 | 권리능력 있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비법인 사단 등 인정 | | |
| 권리능력 | 비법인 사단 등 권리능력 없는 자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존재 | | |
| 절차능력 | 미성년자 등 | 법정대리인 필요 | 서류 보정명령 |
| | 비법인 사단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 필요 | 서류 보정명령 |
| | 재외자 | 특허관리인 필요 | 서류 반려 |

| 주요개념요약 | |
|---------|------------------------------------|
| 재외자 |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
| 재내자 |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
| 내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 |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 절차를 밟는다 | 절차에 요구되는 서면(서류)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행위 |

| 주요내용요약 | | | |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제한 없이 절차 대리 가능 | |
| | 후견인 | 특허취소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재심에 한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 대리 가능 | |
| 임의대리인 | 제6조 절차의 경우 특별수권 필요 | | 위반시 보정명령 |
| | 제8조의 사유로는 임의대리권 소멸되지 않음 | | 제20조 관련 |
| | 포괄위임 가능 | | |
| | 대리권 서면증명 | | 위반시 보정명령 |
| | 개별대리 | | |
| | 대리인 선임/개임 명령 | 명령 전 절차 무효 가능 | |

| 주요내용요약 | | |
|--------|-----------------------------|-----------------------|
| 각자대표 | 제11조 제1항 각 호 이외 절차 각자 진행 가능 | 제11조 제1항 각 호는 특별수권 필요 |
| 대표자선임 | 대표자만 절차 진행 가능 | |
| | 대표권 서면증명 | |

주요내용요약

| | | |
|--|--|--|
| 서류반려 | 특허고객번호 또는 주소지 누락(제3호) | 반려이유통지 → 소명기간(지정기간) 내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 제출 가능(반려이유에 대해 보정 불가능) → 반려요청한 경우, 소명이 미흡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서류 반려처분 →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에 불복 가능 |
| | 외국어 명세서 제외하고 외국어로 기재(제4호) | |
| | 명세서 또는 발명의 설명 누락(제5호) | |
| | 임시명세서(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5호의2, 제15호, 제16호) | |
| | 분리출원(제5호의3, 제5호의4, 제19호) | |
| | 특허관리인 미선임(제6호) | |
| | 기간경과(제7호) | |
| |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제11호) | |
| | 재심사청구(제19호) | |
| | 외국어출원(제20호) | |
| | 중복서류 제출(제21호) | |
| 서류반환 | 수리되기 전 서류에 대해 반환신청하는 절차(시행규칙 제11조2) | |
| 절차무효 | 제3조 제1항 위반 | 보정명령(보정사유통지) → 지정기간 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가능 → 보정에 불응하거나 의견내용이 이유 없는 경우 절차무효 가능 → 절차무효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에 불복 가능 |
| | 제6조 위반 | |
| | 방식 위반 | |
| | 수수료 미납 | |
| 절차를 밟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제출 → 반려여부심사 → 반려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절차무효여부심사 → 무효되지 않아 방식이 적법하게 구비된 절차의 경우 그 절차로써 요구하는 바를 받아줄지의 여부를 심사(=실체심사) 또는 심사없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행정처분 | | |

주요내용 요약

| | | | |
|---------------|---|----|---|
| 기간계산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제34조 확정일 중 일부사안, 제35조 확정일 중 일부사안, 제180조 제3항 확정일 중 일부사안) 외에는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음 | | |
| |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 | |
| 기간변경 | 법정기간 | 연장 |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가능 |
| | | 단축 | 불가 |
| | 지정기간 | 연장 |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능 |
| | | 단축 | 청구에 따라 가능 |
| 추후보완 | 보정명령 지정기간 | |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 만료일로부터 1년 |
| | 제132조의17의 심판청구기간 | | |
| | 제180조 제1항의 재심청구기간 | | |
| | 심사청구기간 | | |
| | 재심사청구기간 | | |
| | 특허료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 | | |
| 절차중단 | 중단사유 | | 수계자 |
| | 당사자 사망 | | 상속인 등(단, 상속포기기간에는 수계불가) |
| | 당사자 합병에 따라 소멸 | |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당사자 절차능력 상실 | | 절차능력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
| | 법정대리인 사망 또는 대리권 상실 | | |
| | 당사자 수탁임무 종료 | | 새로운 수탁자 |
| | 대표자 사망 또는 자격상실 | |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
| | 파산관재인 등 사망 또는 자격상실 | |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 | 수계자가 수계해야 중단된 절차속행 → But 수계자가 수계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상대방이 수계명령 요청 또는 특허청장이 수계명령 → 수계명령에 따른 지정기간 내 수계가 없는 경우 →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후 절차 속행 |
| 절차중지 | 특허청 등의 직무 수행 불가시 당연 중지 → 사유 소멸 후 절차속행(제23조) | | |
| | 당사자에게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특허청장 등의 재량에 따라 결정으로 중지명령함으로써 절차 중지 → 사유소멸 또는 중지결정취소 후 절차 속행(제23조) | | |
| | 심사/소송에 필요한 경우 재량에 따라 심사/소송 절차 중지 → 사유소멸 후 절차속행(78조) | | |
| | 심판/소송에 필요한 경우 재량에 따라 심판/소송 절차 중지 → 사유소멸 후 절차속행(제164조) | | |
| | 제척/기피신청시 긴급한 경우 제외하고 절차중지 → 제척/기피에 대한 결정 후 절차속행(제153조) | | |
| 중단/중지 후 절차속행시 | 기간의 진행이 있었다면 모든 기간 처음부터 다시 진행 | | |

| 주요내용요약 | | |
|--|--------------------------|---|
| 서면작성 | 제출인 성명 | |
| | 제출인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 또는 주소지 | 미기재시 반력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
| 서명 또는 날인 / 전자문서의 경우는 전자서명 | | |
| 서면제출 | 직접제출 | 특허청에서 서면을 접수한 날 제출효력 발생 |
| | 우편제출 | 우체국에서 서면을 접수한 날 제출효력 발생 |
| | | 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서류 / 등록신청서류는 특허청에서 서면을 접수한 날 제출효력 발생 |
| 온라인제출 |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제출효력 발생 | |
| 서면송달 | 교부송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한 때 송달효력 발생 |
| | 우편송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한 때 송달효력 발생 |
| | | 정당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한 경우 발송한 날에 송달효력 발생 |
| | | 특허관리인이 없는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발송한 날에 송달효력 발생 |
| | 온라인송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효력 발생 |
| | 공시송달 |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지난 후 송달효력 발생 |
|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 송달효력 발생 | | |

| 주요내용요약 | | |
|---|--|--|
| 납부 | 절차를 밟는 자가 납부 /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후 출원인이 청구항의 수를 증가하는 보정을 한 경우 그 증가한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납부 | |
| 부당감면제제 |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 징수 + 일정 기간 동안 감면제한 | |
| 반환 | 잘못 납부된 수수료 | 특허청장 등이 수수료 반환 사유에 해당함을 통지 → 통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반환청구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음 |
| | 출원(분할, 분리, 변경, 우선심사신청 출원 제외) 후 1개월 이내 출원의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 |
| | 실체심사결과 통지 전 출원의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 |
| | 실체심사결과 통지 후 지정기간 내 출원의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1/3 | |
| |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재심 포함) 청구료(심판 또는 재심 중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심판청구 취하한 경우(재심 포함) 심판청구료의 1/2 | | |
|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참가신청 취하하거나 또는 참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참가신청료의 1/2 | | |

| 주요내용요약 | | |
|------------------|---|---|
| 취하·포기 | 절차 계속 중 임의의 시기에 취하서·포기서 제출하면 됨 | |
| 취하시기제한 | 국내우선권주장절차(제56조 제2항)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까지 |
| | 정정청구절차(제132조의3 제4항, 제133조의2 제5항, 제137조 제4항) | 정정청구기간 + 1개월 / 정정불인정 의견제출기간 내 |
| | 특허취소신청절차(제132조의12) | 결정서 송달 또는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날까지 |
| 취하불가 | 심사청구절차(제59조 제4항) / 재심사청구절차(제67조의2 제4항) | |
| 취하간주 | 중복특허쟁점 | 변경출원(제53조 제4항), 국내우선권주장시 선출원(제56조 제1항) |
| | 심사/공개쟁점 | 청구범위 미기제(제42조의2 제3항), 국어번역문 미제출(제42조의3 제4항), 심사청구절차 미수속(제59조 제5항) |
| | 심사관/심판관 편의쟁점 | 복수회의 국어번역문제출(제42조의3 제5항), 오역정정(제42조의3 제7항), 명세서/도면 보정(제47조 제4항), 정정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제132조의3 제2항, 제133조의2 제2항, 제137조 제4항) |
| | 국내우선권주장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취하된 경우(제56조 제3항) |
| 포기간주 | 등록료 미납 | 출원(제81조 제3항) |
| 청구항별 출원절차의 취하·포기 | | 청구항별 취하불가 / 단, 등록료 납부시 청구항별 포기는 가능(제215조의2) |

| 주요내용요약 | | | |
|---|---------------------------------------|---|---|
| 특허에 관한 절차 총칙(심사, 심판 절차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규정) | | | |
| 방식 | 서면(서류)반려사유 / 절차무효사유 관련 | | |
| | 절차를 밟는 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 당사자능력(제4조) / 권리능력 / 절차능력(제3조, 제4조, 제5조) | |
| | 절차를 밟는 자의 절차능력을 보조해주는 자(대리인)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후견인 대리권(제3조 제2항) 비교 |
| | | 임의대리인 | 특별수권(제6조) / 서면증명(제7조) / 대리권불소멸(제8조) / 포괄위임(시행규칙 제5조의2) / 개별대리(제9조) / 대리인 선임·개임 명령(제10조) / 복수당사자(제11조) |
| | 수수료 | 납부할 자(제82조) / 감면·면제사유(제83조) / 반환(제84조) | |
| | 서면 | 서면작성 / 서면제출 / 서면송달 | |
| | 기간 | 기간계산 / 기간변경 / 절차추후보완 / 기간정지 | |
| 절차취하·포기 | 취하시기제한 / 취하불가 / 취하간주 / 포기간주 / 청구항별 포기 | | |
| 절차요령승계/속행 | 특허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시 요령승계·절차속행 | | |

| 주요내용요약 | | |
|--------------------------|-----------|--|
| 정당권리자출원절차 특허심판원 → 특허청 | 주체 | 정당권리자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 |
| | 기간 | 무권리자 출원 후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확정, 특허무효심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출원 |
| | 효과 | 출원일 소급효 |
| | 심사청구기간 |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정당권리자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
| | 통지 | 무권리자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 이를 정당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 특허권 이전청구 민사법원 → 특허청 | 주체 | 정당권리자 |
| | 서면 | 소장 |
| | 기간 | - |
| | 효과 |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소급효 있음 |
| 무권리자 출원 | 선원지위 인정 X | |

| 주요내용요약 | | | | |
|--------|---|--|---|---|
| 출원절차 | 주체 | 특허를 받으려는 자 | | |
| | 서면 | 출원서 | 발명자 정정 가능, 단 설정등록 후에는 발명자 정정이 까다로움 | |
| | | 명세서 | 발명의 설명 | 외국어로 작성 가능, 임시명세서로 작성 가능, 미기재시 반력사유,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각 호,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작성 |
| | | | 청구범위 | 외국어로 작성 가능, 제출유예가능(임시명세서), 시행령 제5조,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작성 |
| | | 도면 | 외국어로 작성 가능, 특허는 제42조제3항 제1호 만족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면 되나, 실용신안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반력사유 | |
| | 요약서 | 보호범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 보정범위(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음, 미제출시 보정명령사유 | | |
| | 기간 | 특별히 정해진 기간 없음 | | |
| 효과 | 출원일자를 인정 받고 이후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를 받아 특허결정서를 받을 수 있음 | | | |

| 주요내용요약 | | |
|----------------------|------|---|
| 임시명세서 절차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청구범위 미기재 |
| | 기간 | 출원시 |
| | 효과 | 임시명세서로 제출 가능 /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명세서를 pdf, jpg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도 제출 가능 |
| 전문보정 절차 (청구범위 제출)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보정서 |
| | 기간 |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차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
| | 효과 | 청구범위 보정 |
| | 미제출시 | 기간 내 미제출시 출원절차 취하간주 심사청구(출원인이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출원공개제한(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하는 경우 포함) |

| 구분 | 조항 | 내용 |
|-----------------|---------------|--|
| 보정제한 | 제47조 제5항 |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음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08조 제1항 제2호 | 수수료+번역문+기준일 |
| 분할출원 제한 | 제52조 제1항 단서 |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출원 가능 |
| 분할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 제52조 제7항 |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
| 변경출원 제한 | 제53조 제1항 제2호 | 변경출원의 원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변경출원 가능 |
| 변경출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 제53조 제7항 |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일부터 30일 이내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
| 분리출원 특례 | 제52조의2 제3항 | 분할·변경과 달리 분리출원은 외국어출원 자체가 불가 |
| 심사청구 | 제59조 제2항 제2호 | 출원인 :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 불가 제3차 : 기간제한 없음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10조 | 출원인 : 수수료 + 번역문 제3차 :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1개월 연장기간 이후 (기간제한 있음) |
| 출원공개 | 제64조 제2항 제2호 |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원공개 불가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07조 | 진입완료 후+우선일 1년 6개월 경과+국제공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원공개 불가) |

| 주요내용 요약 | | |
|----------------|---|---|
| | 국어번역문 제출 | 오역정정서 제출 |
| 시기 |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차 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제42조의3 제2항) 단,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출원인이 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는 불가(제42조의3 제3항) |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제42조의3 제6항)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01조 제1항 | 제201조 제6항 |
| 요구되는 서면 | 서류제출서 제출(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 오역정정서 제출(시행규칙 제21조의3제3항)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01조 제1항 | 제201조 제6항 |
| 여러 번 제출 | 최종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42조의3 제5항 단서) |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여러 번 서면이 제출된 경우는 마지막 서면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함(제42조의3 제7항)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01조 제5항 | 제201조 제7항 |
| 효과 | 국어번역문 제출 + 국어번역문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봄(제42조의3 제5항 본문) | 국어번역문 정정(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제47조 제2항 후단의 최종 국어번역문이 됨) (제42조의3 제6항) |
|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 | 제201조 제5항 | 제201조 제6항 |

| 주요내용 요약 | | |
|------------|-----------------|--|
| 외국어출원절차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
| | 기간 | 출원시 |
| | 효과 | 외국어로 명세서, 도면 작성 가능 |
| | 외국어 | 영어 |
| 국어번역문 제출절차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서류제출서, 명세서/도면 번역문 |
| | 기간 |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차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단 명세서/도면 보정, 심사청구절차를 밟은 후에는 불가 |
| | 효과 | 번역문제출 + 명세서/도면 보정 |
| | 미제출시 | 기간 내 명세서 번역문 미제출시 출원절차 취하간주 기간 내 도면 번역문 미제출시 보정명령 명세서/도면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개 제한 |
| 오역정정절차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오역정정서, 정정사항 설명서 |
| | 기간 | 명세서/도면 보정 가능 기간 내 |
| | 효과 | 번역문 정정 |
| 오역관련규정 | 제47조 제2항 전단, 후단 | |

| 국어번역문 제출 | 임시명세서 전문 보정(청구범위 보정) |
|--------------------------|--------------------------|
| 제47조 제5항 / 제208조 제1항 제2호 | - |
| 제52조 제1항 단서 | - |
| 제52조 제7항 | 제52조 제8항 |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209조 | - |
| 제53조 제7항 | 제53조 제8항 |
| 제59조 제2항 제2호 / 제210조 | 제59조 제2항 제1호 |
| 제64조 제2항 제2호 | 제64조 제2항 제1호 |
| -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보정) | 시행규칙 제1항 제5의3(보정) |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분할) | - |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변경) | - |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심사청구)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5호(심사청구) |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조기공개)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6호(조기공개) |

| 주요내용요약 | | |
|--------|--------------|---|
| 발명의 설명 | 제42조 제3항 제1호 |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 도면/기탁절차로 보완 가능,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무효사유 |
| | 제42조 제3항 제2호 | 발명의 배경기술 기재 위반시 거절이유 |
| | 제42조 제9항 | 발명의 명칭 등 기재 누락시 보정명령사유 (임시명세서 예외) |

| 주요내용요약 | | | |
|------------------------|--------------|--|--|
| 청구범위 | 제42조 제4항 제1호 |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발명만 기재,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무효사유 | |
| | 제42조 제4항 제2호 |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무효사유 | |
| | 제42조 제6항 | 기능 또는 물질 등도 기재 가능, 위반 사항 아님 | |
| | 제42조 제8항 | 시행령 제5조 제1항 | 종속항 기재할 수 있음, 위반 사항 아님 |
| | | 시행령 제5조 제2항 | 적정한 수로 기재 |
| | | 시행령 제5조 제4항 | 인용하는 항 번호 기재 |
| | | 시행령 제5조 제5항 | 항 번호 특일적으로 기재 |
| | | 시행령 제5조 제6항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인용할 수 없음 |
| | | 시행령 제5조 제7항 | 먼저 기재한 항만 인용 가능 |
| | | 시행령 제5조 제8항 | 항마다 항을 바꾸어 기재하고, 항번호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일 것 |
| | 제45조 |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 위반시 거절이유 | |
| | | 시행령 제6조 제1호 |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 | | 시행령 제6조 제2호 | 상호관련성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것 |
| 위반시 거절이유, 분할출원으로 극복 가능 | | | |

발명의 성립성 위반 쟁점

| | | |
|---|---|---|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하드웨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발명(혹은 BM발명)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
| | | 에너지보존법칙 등 자연법칙에 어긋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발명 (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537 판결) |
| | 반복재현이 되지 않아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미완성 발명의 경우) | 출원시 용이입수가 불가능하여 미생물의 기탁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탁이 인정되지 아니한 미생물에 관한 발명(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
| | | 약리데이터가 요구되나 약리데이터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품도발명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후2444 판결) |
| | 창작이 아닌 경우 (발견에 불과한 경우) | 미국에서는 인체의 DNA 자체 등을 신의 창작물이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보아 발명이 아니라고 봄 |
| <p>발명의 성립성 위반은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보아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며, 명세서 보정에 의해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 (하자 치유를 위한 명세서 보정을 하면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의 신규사항추가로 취급함)</p> | | |

|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
| 대상 | 발명(물건, 방법, 제조방법 카테고리 포함) (특허법 제2조3호)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 카테고리만 해당)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
| 성립 요건 | 고도성 要 (특허법 제2조1호→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평가) | 고도성 不要 (실용신안법 제2조1호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문구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상이) |
| 진보성 | 쉽게(특허법 제29조 제2항) | 극히 쉽게(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
| 부등록사유 |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특허법 제32조) |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고안(실용신안법 제6조) |
| 도면첨부 | 필요한 경우만 (특허법 제42조 제2항) | 필수 / 미제출시 반려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 우선 심사대상의 상이 | 1.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 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특허법 시행령 제9조) 5.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 1.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특허법 제88조 제1항)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
| 존속기간 연장제도 | 허가 등(특허법 제89조) & 등록지연(특허법 제92조의2) | 등록지연(실용신안법 제22조의2) |
| 요력제한 |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4. 약사법상 조제(특허법 제96조) |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실용신안법 제24조) |
| 간접침해 | 물건, 방법 모두 규정 有 (특허법 제127조) | 방법/물질에 관한 규정은 無 (실용신안법 제29조) |
| 생산방법 주장규정 | 有 (특허법 제129조) | 無 |
| PCT (도면제출) | - |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제출) 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② 도면 미제출시 또는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미제출시 특허청장은 제출명령 可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 可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특허법 47조의 보정으로 취급. 단,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미적용. |
| 침해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
| 몰수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31조).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51조). |
| 전문심리위원 비밀누설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 제226조 제2항). | - |

| 주요내용요약 | |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출원할 경우 거절결정(제33조 제1항 본문) |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자를 누락하고 출원할 경우 거절결정(제44조)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발생 /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징 | 이전 가능(단 공유의 경우 지분양도시 타 공유자 동의 필요, 즉 합유에 준하는 성질이 있음) / 질권설정 불가 / 보상금청구권 행사 가능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출원 전 승계 | 출원이 대항요건 / 이중양도시 먼저 출원한 자가 대항 가능 / 이중양도시 동일자에 출원한 경우 협의하여 정한자에게만 승계효력발생 |
| | 출원 후 승계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효력발생 / 이중양도시 먼저 출원인변경신고한 자에게 승계효력발생 / 이중양도시 동일자에 출원인 변경신고한 경우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효력발생 |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 |
|--------------------|---|-----------------------|
| 공시요구 | 제38조 제4항, 제5항 | 제101조 제1항 제1호 괄호 |
| 이전 | 제37조 제1항 | 제99조 제1항 |
| 실시권설정 | 배타적인 효력이 없어서 실시권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 제100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
| 질권설정 | 제37조 제2항 | 제99조 제2항 |
| 공유 | 제37조 제3항 | 제99조 제2항 |
| 방해배제청구권 | - | 제126조 |
| 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제65조 제2항 |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1조 |
| 과실주정 | - | 제130조 |
| 수용 | 제41조 제2항 | 제106조 |

| 주요내용요약 | |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인지) | 산업 | 의료행위는 산업으로 보지 않음 |
| | 이용가능성 | 장래 기술발전에 힘입어 산업적 실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 |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무효사유 | |
| 신규성 (신규한 발명인지) | 출원 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발명(제29조 제1항 각 호, 즉 공지발명, 공연실시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대비했을 때, ①문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단계, ②기술구성 및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변경 등에 불과하고 효과가 서로 유사한 단계, ③기술구성 및 내용이 다른 단계, ④발명이 서로 다르나 극히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단계, ⑤발명이 서로 다르고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단계 중 ①, ②의 단계에 있을 때 신규하지 않다고 봄. 특히 ②의 단계를 제29조 제1항 각 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함. | |
| |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 |
| 진보성 (진보한 발명인지) | 위 ③, ④의 단계를 제29조 제1항 각 호 보다 진보하지 않다고 봄. 이 중 ④의 단계는 실용신안에서는 진보하다고 보나, 특허에서는 진보하지 않다고 봄. | |
| |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 |

| 주요내용요약 | | |
|----------------------------|---|---|
| 동일한 발명/고안을 다른 날에 출원한 경우 | 실질적으로 신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 출원한 출원이 확대된 선원주의에 위반됨.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 |
| | 확대된 선원의 지위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인정, 선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하더라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발명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음 |
| | |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가 되어야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될 출원공개 이후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확정되더라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 소멸하지 않음 |
| | |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 정당권리자 후출원은 선출원과 발명자가 동일할 것이므로 확대된 선원주의가 적용될 여지 없음 |
| 동일한 발명/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는 선·후출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확대된 선원주의 적용하지 않음 | |
| 동일한 발명인지 | 특허출원뿐 아니라 실용신안등록출원도 고려, 신규성 판단방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의 범위까지 동일한 발명으로 해석 | |

| 주요내용요약 | | |
|--------|--------|--|
| 국제특허출원 | 외국어 출원 | 국제공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었을 때 번역문 제출하면서 국내단계진입 하여야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출원일(우선권주장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
| | 국어 출원 | 국제공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었을 때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출원일(우선권주장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

| 주요내용요약 | | |
|----------------------------|--|--|
| 동일한 발명/고안을 다른 날에 출원한 경우 | 선원의 지위 | 중복특허배제를 위해 나중에 출원한 출원이 선원주의에 위반됨.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
| | |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인정, 선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경우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발명의 내용 변경 |
| | |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확정된 경우 선원의 지위 소멸(단, 제3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확정된 경우는 제외) |
| 동일한 발명/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 무권리자 출원은 선원의 지위 인정하지 않음 |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는 선·후출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중복특허배제를 위해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만 특허 가능, 협의 불성립시 모든 출원이 선원주의에 위반됨. 위반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
| 동일한 발명인지 | 특허출원뿐 아니라 실용신안등록출원도 고려, 신규성 판단방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의 범위까지 동일한 발명으로 해석 | |

| | | 선원의 지위 인정시점 |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시점 |
|--------------------------------|-----------|-------------------------------------|---------------------------------------|
| 통상의 출원 | | 출원일부터 | |
| 출원일 소급효가 있는 절차 | 분할출원 | 원출원일부터 | 분할, 분리, 변경출원 한 날부터 |
| | 분리출원 | | |
| | 변경출원 | | |
| | 정당권리자출원 | 무권리자출원일부터 | |
| 출원일 이외에 우선일이 추가로 인정되는 절차 | 조약우선권주장출원 | 우선권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제54조 제1항 해석) | |
| | | 우선권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출원일부터 | |
|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우선권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제55조 제3항 해석) | 우선권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제55조 제4항, 제6항) |
| | | 우선권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출원일부터 | |

| | 선원의 지위 | 확대된 선원의 지위 |
|----------------|--|--|
| 출원일자가 같은 경우 | 동일자 출원은 선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중복특허배제를 위해 협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만 특허 가능 | 동일자 출원은 문제되지 않음 |
| 출원인/발명자가 같은 경우 | 출원인/발명자가 같더라도 중복특허배제를 위해 적용 | 출원인/발명자가 같으면 적용하지 않음 |
| 인정 조건 | 출원과 동시에 지위 발생 | 출원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광고되어야만 지위 발생 |
| | 지위가 발생했어도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등이 되면 지위 소멸 (단,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 등이 된 경우는 제외) | 지위가 발생했으면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등이 되어도 지위 소멸하지 않음 |
| | 무권리자 출원은 선원의 지위 없음 | 무권리자 출원 관련 규정 없음 |
| | 미완성 발명은 선원의 지위 인정하지 않음 (확대된 선원의 지위 관련 판례 유추 해석) | 미완성 발명은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1. 8. 25. 선고 2011허1746 판결) |
| 인정범위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보정으로써 청구범위를 정정하면 그에 따라 선원의 지위도 정정됨 | 최소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 보정으로써 명세서/도면을 정정하더라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고정 |

| | 신규성 | 진보성 |
|-----------|--|---------|
| 판단대상 |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 |
| 대비대상(~지위) | 출원시(또는 우선시) 기준으로 먼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발명 | |
| 판단방법 | 구성의 동일성 | 구성의 곤란성 |

| | 선원주의 | 확대된 선원주의 |
|-----------|---|--|
| 판단대상 |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 |
| 대비대상(~지위) | 출원일(또는 우선일) 기준으로 선출원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 출원일(또는 우선일) 기준 |
| ~지위 예외 | 선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확정(단 제3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 경우는 제외)된 경우 / 선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 |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로 선출원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 선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광고가 필수 조건 |
| 판단방법 | 구성의 동일성 | |

| | 거절이유 |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 특허취소사유 | 특허무효사유 |
|--|--|---------------------|-------------|-------------|
| 주제 | 제25조 | ○ | 제외 | ○ |
| | 제33조 제1항 본문 | ○ | 제외 | ○ |
| | 제33조 제1항 단서 | ○ | 제외 | ○ |
| | 제44조 | ○ | 제외 | ○ |
|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1호 | ○ | 제외 | ○ |
| | 제42조 제3항 제2호 | 제외 | 제외 | 제외 |
| | 제42조 제4항 제1호 | ○ | 제외 | ○ |
| | 제42조 제4항 제2호 | ○ | 제외 | ○ |
| | 제42조 제8항 | 제외 | 제외 | 제외 |
| | 제45조 | | | |
| 발명의 성립성 |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본문 | ○ | 여기만 취소사유 |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제29조 제1항 본문 | ○ | | ○ |
| 신규성·진보성·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 | 제29조 제1항 각 호 제2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 ○ | | ○ |
| 불특허발명 | 제32조 | ○ | 제외 | ○ |
| 신규사항추기금지 | 제47조 제2항 전단 제52조 제1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제53조 제1항 | ○ | 제외 | ○ |
| 분리출원 범위 추가제한 | 제52조의2 제1항 각호 | ○ | 제외 | 제외 |
| 국어번역문 오역 | 제47조 제2항 후단 | ○ | 제외 | 제외 |
| 조약위반 | - | ○ | 제외 | ○ |
| 특허된 후 특허권자가 제25조에 해당하거나 조약에 위반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외 | 후발적 무효사유 |

| 주요내용요약 | | |
|-----------|----|---|
| 의사에 의한 공지 | 주제 | 출원인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 | 기간 |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 |
| | 효과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기타 |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어 공지된 경우는 제외 출원시 취지 기재,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을 누락했어도 명세서/도면 보정가능기간, 특허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 이내에 보완 가능 |
| 의사에 반한 공지 | 주제 | 출원인 |
| | 서면 | X (문제가 된 경우 의사에 반한 공지 증명) |
| | 기간 |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 |
| | 효과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가능 기간 | | |
|-------------------|------------------|-------------------------|
|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 출원 후 특허결정서 송달 전 | |
|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 일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
| |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 |
| |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 재심사 청구할 때 |

| 주요내용요약 | | |
|-----------------------|---|---|
| 자진보정기간 | - | |
| 최소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 - | 기간 내에 여러 번 보정한 경우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간주 |
|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 제47조 제2항 / 제47조 제3항 / 제51조 제1항 위반시 보정각하결정 | |
| 재심사 청구시 | - | |
| 보정각하결정 | 청구항 삭제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제51조 제1항 괄호) | |
| | 보정각하사유가 있었으나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 직권보정, 직권재심사,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제170조 제1항 후단 괄호)가 있는 경우 이미 지나간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결정 불가(제51조 제1항 단서) | |
| | 단독불복불가, 거절결정과 함께 불복 가능, 불복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 직권재심사,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이미 지나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제51조 제3항 단서 괄호) | |

|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
| 주체 | 제52조 제1항 본문 | 제52조의2 제1항 전단 | 제53조 제1항 본문 |
| 기간 | 제52조 제1항 각호 | 제52조의2 제1항 전단 | 제53조 제1항 제1호 |
| 서면 | 제52조 제3항 | 제52조의2 제2항 (제52조 제3항 준용) | 제53조 제3항 |
| 효과 | 제52조 제2항 | 제52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준용) | 제53조 제2항 |
| 우선권주장 자동승계 | 제52조 제4항, 제5항 | 제52조의2 제2항 (제52조 제4항, 제5항 준용) | - |
| 중복특허취급 | 제36조 제2항 | 제36조 제2항 | 제53조 제4항 |
| 범위 (거절이유) | 제52조 제1항 | 제52조의2 제1항 전단 제52조의2 제1항 각호 | 제53조 제1항 |
| 기타 | 제52조 제1항 단서 (원출원 외국어출원) | - | 제53조 제1항 제2호 (원출원 외국어출원) |
| | 제52조 제6항 내지 제8항 | - | 제53조 제6항 내지 제8항 |
| | 제59조 제3항 | 제59조 제3항 | 제59조 제3항 |

| 주요내용요약 | | | |
|------------|--|---|---|
| 조약우선권 주장절차 | 주체 |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조약당사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조약당사국 출원인 또는 승계인 |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초출원 국가명, 기초출원 연월일 기재 | |
| | | 증명서류첨부 (둘 중의 어느 하나) | 조약 당사국 정부가 인증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
| | | | 조약 당사국 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 |
| | 기간 |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 |
| 효과 | 기초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기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 등을 진행 | | |

주요내용요약

| | | |
|------------|--|---|
| 국내 우선권주장절차 | 주체 | 선출원인 또는 선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승계받은 자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선출원 표시 |
| | 기간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출원 |
| | | 선출원이 절차 계속 중일 것(제5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 효과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 등을 진행 | |

제30조 제1항 제1호 절차 적용과 관련한 분할, 분리, 변경, 조약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 비교

| | 1년 이내 출원에서의 출원일 | 출원일부터 30일 내 증명서류에서의 출원일 |
|----------------|-----------------|--|
| 분할 · 분리 · 변경출원 | 원출원일 | 분할 · 분리 · 변경출원일 (출원일 소급효 예외,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3조 제2항 제2호) |
| 조약우선권주장출원 | 우선권주장출원일(심사기준) | 우선권주장출원일 |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선출원일(제55조 제3항) | 우선권주장출원일 |

| | 조약우선권주장 | 국내우선권주장 |
|----------------|-----------------------------|---------------------|
| 주체 | 제54조 제1항, 파리조약 제3조, 제4조 A.1 | 제55조 제1항 |
| 기간 |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1호 |
| 서면 | 제54조 제3항, 제4항(제5항) | 제55조 제2항 |
| 효과 | 제54조 제1항, 파리조약 제4조 B | 제55조 제3항, 제4항 |
| 이중우선방지 | 판례 | 제55조 제5항 |
| 우선권 주장 보정 / 추가 | 제54조 제7항 | 제55조 제7항 |
| 기타 | 파리조약 제4조 A.3, C.4 | 제5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 | - | 제56조 |

| 출원절차와 관련된 각 절차 요약 | | |
|--------------------------------------|----|--|
| 출원절차 | 주체 | 특허를 받으려는 자(특허법 제42조 제1항) |
| | 서면 |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 | 기간 | 특별히 정해진 기간 없음 |
| | 효과 | 출원일자를 인정 받고 이후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를 받아 특허결정서를 받을 수 있음 |
| 임시명세서절차 (청구범위 유예)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이용할 때 출원서에 취지 기재(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
| | 기간 | 출원시 |
| | 효과 | 정해진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 제출 가능 /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는 pdf, jpg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
| 외국어출원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
| | 기간 | 출원시(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
| | 효과 | 외국어로 명세서, 도면 작성 가능(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 |
| 국어번역문 제출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
| | 서면 | 서류제출서, 명세서/도면 번역문(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
| | 기간 |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차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 단, 명세서·도면 보정, 심사청구절차를 밟은 후에는 불가(특허법 제42조의3 제2항, 제3항) |
| | 효과 | 번역문제출 / 명세서·도면 보정(특허법 제42조의3 제5항) |
| 오역정정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 |
| | 서면 | 오역정정서, 정정사항 설명서(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제3항) |
| | 기간 | 명세서·도면 보정 가능 기간 내(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 |
| | 효과 | 번역문 정정(특허법 제42조의3 제6항) |
| 기탁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 서면 | 출원 전에 기탁하고, 출원서에 취지 기재,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증명서류 첨부 (단,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제외) |
| | 기간 | 출원시 |
| | 효과 | 기탁참작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 |
| 공지예외적용절차 (특발권자에 의한 공지의 경우)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특허법 제30조 제2항) |
| | 기간 |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30조 제1항) |
| | 효과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30조 제1항) |
| 공지예외적용절차 (특발권자 의사에 반한 공지 의 경우)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X (문제가 된 경우 의사에 반한 공지 증명) |
| | 기간 |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30조 제1항) |
| | 효과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30조 제1항) |
| 정당권리자 출원절차 | 주체 | 정당권리자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
| | 기간 | 무권리자 출원 후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확정, 특허무효심결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 출원(특허법 제34조, 제35조) |
| | 효과 | 출원일 소급효 |
| 분할출원절차 | 주체 | 원출원인(특허법 제52조 제1항)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특허법 제52조 제3항) |
| | 기간 | 원출원의 보정기간,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출원(특허법 제52조 제1항) |
| | 효과 |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특허법 제52조 제2항) |
| 분리출원절차 | 주체 | 원출원인(특허법 제52조의2 제1항)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특허법 제52조의2 제2항) |
| | 기간 | 원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허법 제52조의2 제1항) |
| | 효과 |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특허법 제52조의2 제2항) |

| | | |
|-----------------|----|---|
| 변경출원절차 | 주체 | 원출원인(특허법 제53조 제1항)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특허법 제53조 제3항) |
| | 기간 | 원출원 후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출원(특허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 | 효과 |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특허법 제53조 제2항) |
| 조약우선권 주장절차 | 주체 | 조약 당사국 출원인(특허법 제54조 제1항), 승계인(파리조약 제4조)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초출원 국가명, 기초출원 연월일 기재, 증명서류 첨부(특허법 제54조 제3항, 제4항) |
| | 기간 |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54조 제2항) |
| | 효과 | 기초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기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 등을 진행(특허법 제54조 제1항) |
| 국내우선권 주장절차 | 주체 |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특허법 제55조 제1항)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선출원 표시(특허법 제55조 제2항) |
| | 기간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 | 효과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 등을 진행(특허법 제55조 제3항, 제4항) |
| 조약우선권주장 보장,추가절차 | 주체 | 조약우선권주장을 한 자(특허법 제54조 제7항) |
| | 서면 |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
| | 기간 |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보정서 제출(특허법 제54조 제7항) |
| | 효과 | 조약우선권주장 보장, 추가(특허법 제54조 제7항) |
| 국내우선권주장 보장,추가절차 | 주체 |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자(특허법 제55조 제7항) |
| | 서면 |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
| | 기간 | 선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보정서 제출(특허법 제55조 제7항) |
| | 효과 | 국내우선권주장 보장, 추가(특허법 제55조 제7항) |
| 명세서, 도면 보정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47조 제1항) |
| | 서면 |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
| | 기간 | 자진보정기간, 일반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거절결정에 따른 재심사 청구시 보정서 제출(특허법 제47조 제1항) |
| | 효과 | 명세서, 도면 보정 |
| 발명자 정정절차 | 주체 |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서면 |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
| | 기간 | 제한 없음 |
| | 효과 | 발명자 정정 |
| 심사청구절차 | 주체 | 누구든지(특허법 제59조 제2항) |
| | 서면 | 심사청구서(특허법 제60조 제1항) |
| | 기간 | 출원일로부터 3년(특허법 제59조 제2항, 제3항) |
| | 효과 |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착수(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
| 우선심사 신청절차 | 주체 | 일부 사유 제외하고 누구든지(고시) |
| | 서면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
| | 기간 | 심사청구 후 |
| | 효과 | 우선심사 |
| 특허여부 결정 보류신청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 | 서면 | 결정보류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 | 기간 | 심사청구 후 출원일로부터 6개월(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 | 효과 | 출원일로부터 1년 경과 전까지 특허여부결정 보류(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 심사유예 신청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
| | 서면 | 심사유예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
| | 기간 | 심사청구 후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
| | 효과 | 유예희망시점까지 심사유예(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

| | | |
|--------------|----|-------------------------------------|
| 조기공개 신청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64조 제1항) |
| | 서면 | 조기공개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
| | 기간 |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출원공개 전) |
| | 효과 | 조기공개 |
| 재심사 청구절차 |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
| | 서면 | 보정서, 재심사청구취지 표시(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 | 기간 | 거절·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
| | 효과 | 거절·특허결정취소, 재심사(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

| 이유 | 요건 |
|--------------------------------------|--|
| 일본 | 1.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2. 일본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
| 기타 합의한 국가 | 1. 대상국가 등의 특허출원(대응출원)에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
| 기타 합의한 국가에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 | 1. 대상국가 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대응국제출원)에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이 있는 경우 2. 해당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국제출원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

| | 출원발명 | 특허발명 |
|--|----------------------|-------------------------------------|
| 출원발명은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공개될 수 있고(출원공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단, 출원발명은 출원절차의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확정으로 특허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특허발명보다 보호 등이 일부 미흡하다. | | |
| 침해금지청구 / 침해죄 | - | 제126조 / 제225조 |
| 간접침해범위 | 제65조 제5항 | 제127조 |
| 배상청구 | 제65조 제2항 | 제128조, 제131조 |
| 생산방법주장 | 제65조 제5항 | 제129조 |
| 과실주장 | - | 제130조 |
| 모방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 제65조 제5항 | 제132조 |
| 모방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 | 제126조의2 |
| 배상액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감정사항 설명의무 | - | 제128조의2 |
| 이전(양도/일반승계) | 제37조 제1항, 제3항 / 제38조 | 제99조 제1항, 제2항 / 제101조 제1항 제1호 |
| 질권, 실시권 설정 | 제37조 제2항 | 제99조 제2항, 제4항, 제100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
| 수용 | 제41조 제2항 | 제106조 |
| 포기제한 | - | 제119조 |

| 출원절차 | 특허등록 이후 |
|---------------------------------|---|
| 등록료 납부시 청구항별 포기 (제215조의2) | 청구항별 특허권 포기 (제215조에서 제119조 준용) |
| | 청구항별 특허취소결정 / 특허무효심결 (215조에서 제132조의13 제3항, 제133조 제3항 준용) |
| | 청구항별 특허취소신청 / 특허무효심판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제132조의2 제1항 단서, 제133조 제1항 단서, 제135조 제3항) |
| | 청구항별 특허취소신청, 특허무효심판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취하 (제132조의12 제2항, 제161조 제2항) |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 제도의 규정이 동일하다.

| | 허가 등에 따른 | 등록지연 |
|-------------|---|---|
| 출원기간 |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단, 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는 불가 (제90조 제2항) |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제92조의3 제2항) |
| 출원요과 | 존속기간연장등록간주(제90조 제4항, 제5항) | - |
| 출원서 작성내용 | 1.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연장대상청구범위 2. 연장신청기간 3. 허가 등의 내용 4. 연장이유(제90조 제1항, 시행규칙 제53조) | 1.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2. 연장신청기간 3. 연장이유(제92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
| 보정대상 | 1. 연장대상청구범위 2. 연장신청기간 3. 허가 등의 내용 4. 연장이유(제90조 제6항) | 1. 연장신청기간 2. 연장이유(제92조의3 제4항) |
| 연장된 특허의 효력 |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침(제95조) | - |
|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 1. 연장대상이 아닌 경우 2.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 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기간이 초과된 경우 4. 특허권자가 출원하지 않은 경우 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 1. 연장신청기간이 초과된 경우 2. 특허권자가 출원하지 않은 경우 3.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

| 재산권 사용·수익·처분 행위시의 동의 내용 정리(특허청 자료) | | | | | | |
|------------------------------------|----------|--|------|------|------|-------|
| 유형 | | 공유자 | 특허권자 | 전용권자 | 통상권자 | 질권자 등 |
| 특허권 | 이전 | 동의 | | | | |
| | 질권 설정 | 동의 | | | | |
| | 전용실시권 설정 | 동의 | | | | |
| | 통상실시권 설정 | 동의 | | | | |
| | 포기 | | | 동의 | 동의 | 동의 |
| 전용실시권 | 이전 | 동의 | 동의 | | | |
| | 질권 설정 | 동의 | 동의 | | | |
| | 통상실시권 설정 | 동의 | 동의 | | | |
| | 포기 | | | | 동의 | 동의 |
| 통상실시권 | 이전 | 동의 | 동의 | 동의 | | |
| | 질권 설정 | 동의 | 동의 | 동의 | | |
| | 포기 | | | | | 동의 |
| 비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동의 불요 ·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불요 | | | | |

| 동의 관련 규정 정리 | | | | |
|--|---------------------------|--|----------------------------------|----------------------------------|
| 특허에 관한 절차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제3조 제2항 (동의 불요) 제140조 제2항 제1호 괄호 제140조의2 제2항 제1호 괄호 제161조 제1항 단서 | 제37조 제3항 |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9조의2 제3항 (동의 불요) 제119조 제1항 제136조 제8항 | 제100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19조 제2항 | 제102조 제5항 내지 제7항 제119조 제3항 |
| 기타 | 제224조의5 제3항, 제112조 제3호 단서 | | | |

|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제105조 |
|---|--|--|
| 주체 | 사용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의 배타권을 이전받지 아니한 경우) | 원 디자인권자 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 당시 등록된 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사견)] |
|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일 것 · 사용자가 대기업인 경우는 사전에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계약 또는 규정을 체결했을 것 · 사용자가 중소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예약승계계약 또는 규정을 체결한 경우는 승계여부통지의무를 기간 내 준수했을 것 | 특허출원(우선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즉, 후출원이 아닐 것)한 디자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었을 것 |
| 실시권 범위 | 특허발명 범위 | 원 권리(원 디자인권 또는 원 실시권) |
| 대가 | 무상 | 원 디자인권자는 무상 |
| 위 2개는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하는 실시권인바, 대가가 무상이며, 실시권의 범위가 제한 없이 넓다. | | |

| | 제81조의3 제5항, 제6항 | 제103조 | 제103조의2 | 제104조 |
|--------|--------------------------------------|---------------------------|---|---|
| 주체 | 선의 | 선의 | 선의의 특허권자, 등록된 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 | 선의의 특허권자, 등록된 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 |
| 요건 | 특허료 불납에 따른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 출원(우선일시)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허권 이전등록이 있기 전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 특허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 특허무효심판청구 등록(예고등록) 전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
| 실시권 범위 | 사업목적범위 | 사업목적범위 | 사업목적범위 | 사업목적범위 |
| 대가 | 유상 | 무상 | 유상 | 유상 |

| | 제122조 | 제182조 | 제183조 |
|--------|--|---------------------------------------|---------------------------------------|
| 주체 | 선의의 전 특허권자 | 선의 | 선의의 특허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의 실시권자 |
| 요건 | 질권설정이전 / 공유물분할청구이전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 심결확정 후 재심청구등록(예고등록) 전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 심결확정 후 재심청구등록(예고등록) 전 국내에서 실시 또는 실시준비 |
| 실시권 범위 | 특허발명 | 사업목적범위 | 원실시권의 사업목적범위 |
| 대가 | 유상 | 무상 | 유상 |

|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대비 | | 특허권 | 전용실시권 |
|--|-------------|---------------------------------|---------------------------------|
| 대세효가 있는 배타권 | | 제94조 제1항 | 제100조 제2항, 제94조 단서 |
| | | 제126조 | 제126조 |
| | | 제128조 | 제128조 |
| | | 제131조 | 제131조 |
| | | 제225조 | 제225조 |
| 특허원부 등록 | | 제101조 제1항 제1호 | 제101조 제1항 제2호 |
| 재산권 | 이전(양도/일반승계) | 제99조 제1항, 제2항 | 제100조 제3항, 제5항 |
| | 실시권 설정 | 제100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99조 제4항 | 제100조 제4항, 제5항 |
| | 질권 설정 | 제99조 제2항, 제121조, 제123조 | 제100조 제5항, 제121조, 제123조 |
| | 포기 |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제119조 제1항 |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20조, 제119조 제2항 |
| 강제실시권 | | 제107조, 제138조 | 제107조, 제138조 |
| 기타(실시보고, 표시) | | 제125조, 제223조 | 제125조, 제223조 |
| 양 권리는 공히 대세효가 있는 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규정이 많다 | | | |

| 전용실시권과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대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배타성 | 제100조 제2항 | - |
| 통상실시권 설정 | 제100조 제4항 | - |
| 특허원부의 등록의 효력 | 제101조 제1항 제2호 | 제118조 제1항, 제3항 |
| 위 차이는 배타성의 유무에 따른 점이다. 전용실시권은 통상실시권과 달리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권리 또는 권리의 변동은 등록해 제3자에게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외에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사용·수익·처분행위)처분행위는 전용실시권과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규정이 유사하다. | | |

| 실시권정리 | 실시권의 종류 | 발생원인 |
|-------|----------------|----------------------------|
| 전용실시권 | 설정등록에 의한 전용실시권 | 실시계약 후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
| 통상실시권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실시계약에 의해 발생 |
| | 강제실시권 | 특허청장의 결정 또는 재정이나 심판에 의해 발생 |
| | 법정실시권 | 법률에 의해 발생 |

| 실시권정리 | 전용실시권 | 허락통상실시권 |
|---|----------------------|--------------------|
| 성질 | 배타성 있음 (용역물권적 권리) | 배타성 없음 (채권적 권리) |
| 실시권 범위 | 계약 및 설정등록 | 계약 |
| 발생 | 설정등록일 | 계약일 |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있음 | 없음 |
| 설정, 이전(상속 기타일반승계제외), 변경, 소멸(혼동, 상위 권리의 소멸에 의한 것 제외), 처분의 제한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
|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일반승계제외), 변경, 소멸(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 제외), 처분의 제한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 |
| 실시권 설정계약 | 가능 | 불가능 |

| | 1호(불실시) | 2호 (불충분실시) | 3호(공익) | | 4호 (불공정거래시정) | 5호 (의약품수출) |
|------------|--|--|---------------|------|--------------------------|--------------------------|
| | | | 상업적 | 비상업적 | | |
| 선협의 절차 | ○ | ○ | ○ | × | × | ○ |
| 반도체 기술 | × | × | × | ○ | ○ | × |
| 시기적 제한 | ○ i) 계속하여 3년이상 ii) 출원일로 4년경과 | ○ i) 계속하여 3년이상 ii) 출원일로 4년경과 | × | | × | × |
| 조건부기 | ○ (국내수요충족) | ○ (국내수요충족) | ○ (국내수요충족) | | × | ○ (의약품 전량 수입국에 수출) |
| 대가결정 참작 | × | × | × | | ○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취지) | ○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

| |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
| | | | 허락 | 법정 | 강제 |
| 발생 | | 계약 + 등록(발생요건) | 계약(등록은 대항요건) | 법률의 규정 | 법 106-2 : 처분결정 법 107 : 제정등본송달 법 138 : 심결확정 (모두 직권등록사항) |
| 효력 | 범위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 | 법률의 규정 | 법 106-2 : 결정의 범위 내 법 107 : 제정의 범위 내 법 138 : 자기 특허발명의 실시 에 필요한 범위 내 |
| | 효력 | 배타권, 실시권 | 실시권 | | |
| 사용 수익 처분 | 이전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기타일반승계 3) 특허권자의 동의 (법 100㉓)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기타일반승계 3)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 권자의 동의 (법 102㉓)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기타일반승계 3) 특허권자의 동의 (법 102㉓) | 법 106-2 : 규정 無 법 107㉓ : 사업과 함께 법 138㉓ : 원권리와 함께 |
| | 실시권 | 특허권자의 동의 (법 100㉓) | 설정불가 | | |
| | 질권 | 특허권자의 동의 (법 100㉓)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동의 (법 102㉓) | 특허권자 동의 (법 102㉓) | 법 107, 법 138 질권 설정 불가 (법 106-2 : 규정 無) |
| | 특허권 포기 | 동의권 有 | 1.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2. 직무발명에 의한 법정실시권자 동의권 有 | | |
| | 실시권 포기 | 통상실시권자, 질권자 동의 (법 119㉓) | 질권자 동의 (119㉓) | 질권자 동의 (119㉓) | 법 107, 법 138 자유롭게 포기 가능(질권자 없으므로) |
| 소멸 | | · 특허권의 소멸 및 수용 · 설정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멸등록 · 실시권 포기등록 · 설정기간 만료 · 혼동 | · 특허권의 소멸 및 수용 · 설정계약의 해지 · 실시권 포기 · 설정기간 만료 · 혼동 | · 특허권의 소멸 및 수용 · 실시권 포기 · 혼동 · 실시사업폐지 | · 특허권의 소멸 및 수용 · 실시권 포기, 혼동 · 법 106-2 : 실시허가취소 · 법 107 : 제정의 취소 · 법 138 : 원권리 소멸 |
| 대가 | | 계약에 따라 | 계약에 따라 | 직무발명, 선사용권, 디자인권(원디자인권자만), 후용권 - 무상 나머지 유상 | 법 106-2 : 지급 법 107 : 지급, 공탁(법112) 미지급시 제정실효 법 138 : 지급, 공탁(법 138㉓ 단서) |

| | | 법 제106조의2 | 법 제107조 | 법 제138조 |
|------------------|--------|---|--|---|
| 의의 | |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필요한 경우,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하여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을 말한다. | 특허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해당하여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기 심판에 의하여 하여되는 실시권을 말한다. |
| 성 질 요 건 | 주체적 | 정부 | 불 실시 · 불충분 실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필요한 경우(비상업적 실시 제외) ·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등과 협의 불성립한 자 | - 일반적인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인은 이용·저촉관계의 후출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 CROSS-LICENSE 청구인은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선출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원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학설 대립) |
| | 객체적 | -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비상사태 - 극도의 긴급상황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불 실시·불충분 실시 - 공익을 위하여 특허 필요,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반도체 기술은 이 경우에만 해당(단, 상업적 실시는 제외) -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 | - 이용·저촉관계(법98) - 협의 불성립 → 위반된 경우 심결각하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상의 진보(법138㉔) - 크로스 라이선스의 경우(법138㉕) |
| | 시기적 | - | - 불 실시 · 불충분 실시의 경우 특허발명이 출원일로부터 4년 경과 | - 타 배타권 권리의 존속중 |
| | 지역적 | - 국내 | | |
| 절차 | | - 처분의 신청 - 부분의 송달 - 처분 및 보상금액의 결정 - 등본의 송달 및 공고 - 불복 | - 청구 - 부분송달 및 답변서 제출 - 의견청취 - 재정 - 등본의 송달 - 불복 | - 청구 - 부분송달 및 답변서 제출 - 심리 - 심결 - 등본의 송달 - 불복 |
| 발생 | | 결정서 등본의 송달 | 재정서 등본 송달 | 심결확정 |
| 요 력 | 효력범위 | 특허청장의 결정범위 | 재정에서 정한 바 |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
| | 실시 금지요 | 없음 | | |
| 내 에 | 실시권 설정 | 설정불가 | | |
| | 질권설정 | 학설의 대립 | 질권설정 불가 | |
| | 이전 | 학설의 대립 | 실시사업과 함께 | 실시권의 허여원인이 되는 원권리와 함께 |
| | 특허권 포기 | 동의 불가 | | |
| | 실시권 포기 | 질권설정 가능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 자유롭게 포기 가능 | |
| 소멸 | | 특허권의 소멸, 실시권의 포기, 특허권의 수용, 혼동, 정부의 실시여가의 취소(법106조의2), 제정의 취소(법114) 및 실효(법113), 원권리의소멸(법138) | | |
| 대가 | | 有 | 1. 有 2. 다만 예외적인 경우 공탁 | |

| |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제97조) | 제3자 실시발명 |
|------|------------------------------|--------------------|
| 문언범위 | A+B | A+B |
| 균등범위 | | A'+B |
| 이용관계 | | A+B+C 또는 A'+B+C |
| 간접범위 | | A, A', A+C 또는 A'+C |

| | | 징역 | 벌금 | 친고죄 여부 | 양벌규정 가부 |
|------------|----------------|-------------------|---------|---------------|---------|
| 침해죄 | | 7년 이하 | 1억 이하 | X (반의사불벌죄) | ○ |
| 비밀누설죄 | 직원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X | X |
| | 전문 심리 위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1천만원 이하 | X | X |
| 위중죄 |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X | X |
| 허위표시의 죄 |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X | ○ |
| 거짓행위의 죄 |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X | ○ |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 X |

| 주요내용요약 | | |
|----------------------|-----------------------------|---|
| 기탁필요여부 | 출원시 용이입수 불가능 | 출원 전에 기탁기관에 기탁한 후 특허청에서 기탁절차를 밟아야 함. 출원 전에 기탁하지 않았거나 기탁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탁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는 제42조 제3항 제1호 등으로 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음 |
| | 출원시 용이입수 가능 | 출원 전 기탁이 필수는 아님.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면 됨 |
| 기탁절차 | 주체 | 출원인 |
| |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재, 증명서류 첨부 (단,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제외) |
| | 기간 | 출원시 |
| | 효과 | 기탁참작하여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 |
| 출원용으로 기탁된 미생물의 분양 | 허락 받은 경우 | 분양 가능, 타인의 이용은 금지 |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 |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분양 가능, 타인의 이용은 금지 |
| | 제63조 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 |

| | 특허취소신청 | 특허무효심판 |
|--------------------------------|--|---|
| 제도 취지 |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
| 절차 | 복합계 절차 (제3자가 신청하나, 이후 절차는 특허청과 특허권자가 진행) | 당사자계 절차 |
| 신청인/청구인 적격 | 누구나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 신청/청구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 (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 | 설정등록 후 언제나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멸 후에도 가능) |
| 심판장 보정명령 | 특허취소신청서에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심판장이 보정명령하지 않음 (제132조의5 제1항 제1호 괄호) |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심판장이 보정명령 함 (제141조 제1항 제1호) |
| 취하 | · 청구항별로 가능 · 결정등본 송달과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까지만 가능 | · 청구항별로 가능 ·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 (단, 답변서 제출 후에는 피청구인 동의 필요) |
| 취소/무효사유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원 | 제133조 제1항 |
| 심리방식 | 서면심리 | 서면 또는 구술심리 |
| 전문심리위원/ 적시제출주의/ 조정위원회 회부 | 無 | 有 (제154조의2, 제158조의2, 제164조의2) |
| 복수사건의 심리 | 병합 | 병합여부 재량 |
| 결정/심결 | 취소결정(취소결정 전에 반드시 취소이유통지), 기각결정, 각하결정, 특허취소신청서각하결정 | 무효심결, 기각심결, 각하심결, 심판청구서각하결정 |
| 불복 | 취소결정, 특허취소신청서각하결정만 특허법원에 불복 가능(피고는 특허청장) 기각결정, 각하결정은 불복불가 |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불복 가능 |
| 청구이유보증 | 특허취소신청 가능 기간 또는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까지 | 심리종결전까지 |
| 참가 | 특허권자측 보조참가만 가능 | 당사자참가, 청구인/피청구인측 보조 참가 모두 가능 |
| 심판비용부담 | 특허취소신청인이 부담(제165조 제3항을 준용) |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 |

| 유형 | 사건의 종류 | 청구취지 | |
|--------------------------|---------------------------------|--|--|
| 결정계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 | 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거나 특허결정(존속기간연장등록결정)한다. | |
| |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 특허 제xx호(또는 특허 제xx호의 청구범위 제xx항)를 무효로 한다. | |
| 당사자계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 1. 특허 제xx호(또는 특허 제xx호의 청구범위 제xx항)를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 |
| |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 1. 특허 제xx호의 연장된 존속기간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 |
| | 정정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 1. 특허 제xx호의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xx의 확정 심결에 의한 정정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 |
| |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 적극적 |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xx호(또는 특허 제xx호의 청구범위 제xx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
| | | 소극적 |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xx호(또는 특허 제xx호의 청구범위 제xx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
| 통상실시권허락심판 (특허법 제138조) | 특허 제xx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 | |
| 복합계 | 특허취소신청 | 특허 제xx호(또는 특허 제xx호의 청구범위 제xx항)를 취소한다. | |

| 종류 | 청구인(신청인) | 피청구인(특허권자) |
|-----------------------------|---------------------------|--|
| 특허취소신청 | 누구든지 | 특허권자 |
| 특허출원/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 출원인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 - |
| 특허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심사관 (제133조 제1항) | 특허권자(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
|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심사관 (제134조 제1항) | 특허권자(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
| 정정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심사관 (제137조 제1항) | 특허권자(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적극적 | 특허권자(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전용 실시권자 (제135조 제1항) |
| | 소극적 | 이해관계인(제135조 제2항) |
| 통상실시권허락심판 | 제1항 | 후원 권리 실시자(특허권자는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제138조 제1항) |
| | 제3항 |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특허권자는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전부) (제138조 제3항) |

| | 제141조 | 심판청구이익 |
|----|--|--|
| 주체 | 심판장 | 심판부합의체 |
| 대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판사건 오기제 청구이유 미기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미첨부 정정심판에서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미첨부 심판에 관한 절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능력 위반(제3조) 대리권 흠결(제6조) 수수료 미납 기타 이 법에서 정한 방식 위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실존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일사부재리에 위반된 경우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민사소송법 제259조 준용) 심판청구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 후 대상 출원이 취하·포기되거나, 대상 특허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등 심판대상물이 소멸한 경우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 청구 심결확정 전에 재심청구되거나, 재심 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발명과 다른 경우 권리 대 권리 저촉관계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절차 | 보정명령으로써 보정기회 부여 | 보정 가능한 것이라면 보정명령으로써 보정기회 부여, 보정으로써 지유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닌 경우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결 각하 가능(제142조) |
| 처분 | 심판청구서 결정각하 | 심판청구 심결각하 |
| 불복 |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제186조 제3항) 특허청장이 피고(제187조) | 각하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제138조 제3항)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장, 당사자에게 심판은 피청구인이 피고(제187조) |

| 심결문 | |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원 결정 및 xxx. xx. xx. 보정각하결정(보정각하가 있었고 위법한 경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
| | 원 결정 및 xxx. xx. xx. 보정각하결정(보정각하가 있었고 위법한 경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정정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특허 제xx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특허 제xx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xxx. xx. xx.에 보정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한 경우).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특허무효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특허 제xx호를 무효로 한다(청구항별 무효 가능) |
| | 3.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청구항별 가능) |
| | 3.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특허 제xx호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정정무효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특허 제xx호의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xx의 확정심결에 의한 정정을 무효로 한다. |
| | 3.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3.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xx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xx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청구항별 가능). |
| | 2. 심판비용은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한다. |
| 통상실시권여력심판 |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1.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특허 제xx호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소유인 특허 제xx호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제138조 제1항의 경우). / 청구인은 특허 제xx호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제138조 제3항의 경우). |
| | 2. 청구인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실시제품의 공장도가의 xx%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청구인에게 지불할 것으로 한다. |
|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특허취소신청 | 특허 제xx호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각하한다.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특허 제xx호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하한다(청구항별 가능).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특허 제xx호를 취소한다(청구항별 취소 가능). |
| | 1. 정정을 인정한다(정정청구가 있고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 |
| | 2. 특허 제xx호에 대한 취소신청을 기각한다(청구항별 가능). |

| 각종 추가절차의 결정문 | |
|--------------|---|
| 참가신청 | 이 사건 참가신청서를 각하한다(제141조 제1항 제2호, 제2항). |
| | 이 사건 심판의 참가를 허가한다. |
| | 이 사건 심판 참가신청을 기각한다. |
| 제척·기피신청 | 이 사건 제척·기피신청서를 각하한다. |
| | 이 사건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한다. |
| | 심판관 xxx을 위 심판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한다. |
| | 이 사건 제척·기피신청을 기각한다. |
| 심판비용액청구 | xxxx. xx. xx 자 xx 심결에 의하여 청구인/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심판비용액을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일금 xx 원정으로 결정한다. |

| 보정각하결정요건(제51조 제1항)과 정정요건을 대비 | | | |
|------------------------------|-----------------------|---|--------------------------|
| 요건 | 최후거절이유통지 / 거절결정 이후 보정 | 특허취소신청 /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 | 정정심판 /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 |
| 특허청구범위 감축 / 오기정정 / 석명 | 적용 | | |
| 신규사항추가금지 | 최소 명세서 또는 도면 범위 내 | 특허발명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 (단, 오기정정은 최소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 | |
| 특허청구범위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금지 | - | 적용 | |
| 독립특허요건 | 적용 | 특허취소신청 / 특허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미적용 | 적용 |

| 정정심판,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청구,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의 법률을 대비 | | | | |
|--|--|--|--|--|
| | 정정심판 |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청구 |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
| 시기 | 제136조 제2항, 제7항 | 제132조의13 제2항 | 제147조 제1항 제159조 제1항 후단 제133조의2 제1항 후단 | 제147조 제1항 제159조 제1항 후단 제137조 제3항 후단 |
| 청구 | 제140조 제1항 제136조 제8항 | 제140조 제1항 제136조 제8항 | 제140조 제1항 제136조 제8항 | 제140조 제1항 제136조 제8항 |
| 승달 | - | - | 제133조의2 제3항 | 제133조의2 제3항 |
| 요건 | 제136조 제1항 제136조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136조 제5항 | 제136조 제1항 제136조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136조 제5항 (단, 특허취소신청된 청구항은 적용 X) | 제136조 제1항 제136조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136조 제5항 (단, 특허무효심판청구된 청구항은 적용 X) | 제136조 제1항 제136조 제3항 제136조 제4항 제136조 제5항 |
| 예고통지 | 제136조 제6항 | 제136조 제6항 | 제136조 제6항 | 제136조 제6항 |
| 보정 | 제136조 제11항 | 제132조의13 제12항, 제136조 제6항 | 제133조의2 제1항, 제136조 제6항 | 제137조의 제3항, 제136조 제6항 |
| 취하 | 제161조 제1항 본문 | 제132조의3 제4항 | 제133조의2 제5항 | 제133조의2 제5항 |
| 특허공보 | 제136조 제12항, 제13항 | 제136조 제12항, 제13항 | 제136조 제12항, 제13항 | 제136조 제12항, 제13항 |

| 종류 | 결정/심결 | 원고 | 피고 |
|---------|------------|--------|--------|
| 당사자계 심판 |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심판청구인 | 특허청장 |
| | 각하심결 | 심판청구인 | 심판피청구인 |
| | 인용 취지심결 | 심판피청구인 | 심판청구인 |
| | 기각심결 | 심판청구인 | 심판피청구인 |
| 결정계 심판 |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 심판청구인 | 특허청장 |
| | 각하심결 | 심판청구인 | 특허청장 |
| | 인용 취지심결 | 불복X | |
| | 기각심결 | 심판청구인 | 특허청장 |
| 특허취소신청 | 신청서 각하결정 | 신청인 | 특허청장 |
| | 각하결정 | 불복X | |
| | 취소결정 | 특허권자 | 특허청장 |
| | 기각결정 | 불복X | |

|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
|--------|--|--|
| 대상 | 모든 국제출원 | 국제예비심사 청구된 국제출원 |
| 보정 |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 |
| 단일성 결여 | 추가수수료 지불 | 청구범위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 |
| 이용가능자 | 국제출원 할 수 있는 자 | 제2차 규정에 구속된 계약국 거주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계약국을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한 경우만 적용 |
|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 원칙적 불허용 ② 국제조사 중 보정 불허용 ③ 불리한 보고 작성 전 예고받을 권리 없음 ④ 국제조사보고서·부작성 선언서, 견해서 작성으로 절차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의견교환 가능 ② 국제예비심사 중 보정허용 ③ 불리한 보고 작성 전 예고받을 권리 있음 ④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으로 절차 종료 |

| | PCT19조 보정 | PCT34조 보정 |
|------|--|------------------|
| 주체 | 국제조사보고서 받은 출원인 | 국제예비심사 청구한 출원인 |
| 시기 | 국제조사보고서 송달일로부터 2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은 날까지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시까지 |
| 제출처 |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
| 횟수 | 1회 | 횟수 제한X |
| 보정대상 | 청구범위 |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
| 보정범위 |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 |

| 자기지정종류 | 요건(제55조 제1항) | 절차 (PCT) | | 효과 | | |
|-----------------|--|----------------------------|---|---|---|--|
| | | 우선권주장의 절차 | 우선권주장의 취하 | 선출원의 취하간주 | 판단시점의 소급 (제55조 제3항, 제202조 제3항) | 확대된 선원의 지위 (제55조 제4항, 제202조 제3항) |
| 선출원이 PCT 출원인 경우 | 1. 선출원이 후출원 시 계속 중이고, 분할, 변경출원이 아닐 것 2. 선출원발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일 것 3. 발명의 동일성 4. 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 출원 | 국제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 |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이 지나기 전 또는 국내 서면 제출기간 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 中 빠른 날까지 우선권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 취하 가능 | 기존일과 국제출원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한 때 중 늦은 때 취하간주 (제202조 제3항) | 후출원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원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판단시점 소급 | 후출원의 출원공개 / 국제공개 / 등록공고 + 후출원의 원문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원문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 |
| 선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 | | | 선출원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한 때 취하간주(제56조 제1항) | 후출원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판단시점 소급 | 후출원의 출원공개 / 국제공개 / 등록공고 + 후출원의 원문에 기재된 발명 중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 |